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- (한국) 지방의원 의정비 실태와 문제점
- (일본) 요코하마시의 코로나19 대책과 재난 커뮤니케이션

지방재정

- (미국) 미네소타 트윈시티 대도시권 (Twin Cities metropolitan area)의 지방세 공동세원(Tax-base sharing) 프로그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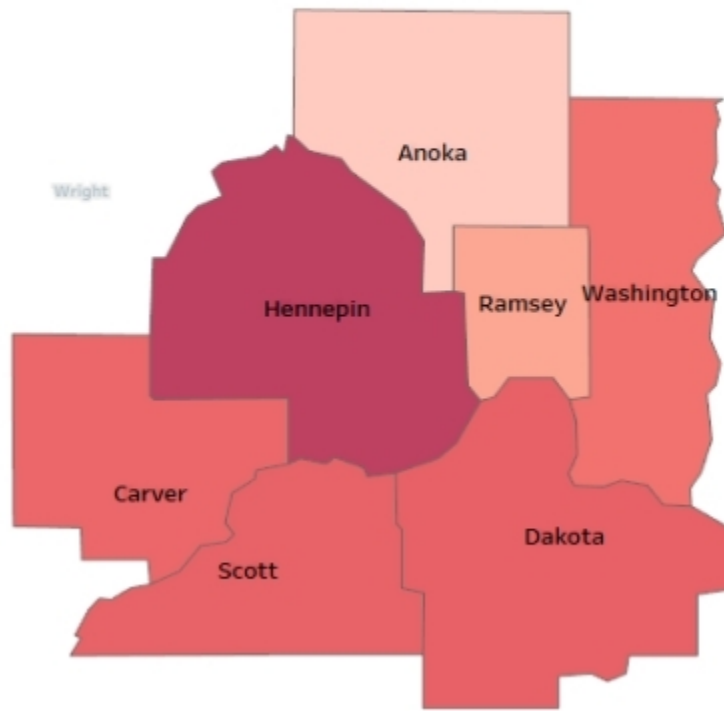
미네소타 트윈시티 대도시권(Twin Cities metropolitan area)의 지방세 공동세원(Tax-base sharing) 프로그램

개요 및 추진 배경

- 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은 흔히 '재정격차 프로그램(Fiscal Disparities Program)'으로 불리며, 미네소타 주의 트윈시티 대도시권역에서 권역 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되었음
- 지역 간 지방세원의 불균형은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 재정적 역량 사이에 불일치를 발생시킴
-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 가용한 자원 및 주민과 사업체 유치 능력에 차이가 있음
- 따라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차이는 재정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게 되며, 이러한 불균형은 권역 전반의 질서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
- 공동 세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불균등한 조세자원의 분포를 완화하고 권역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도입됨

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의 범위 및 목적

- 트윈시티 권역 지방세 공동세원(Tax-base sharing)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(Minneapolis)와 세인트폴(Saint Paul)에 걸친 7개 카운티를 포함함
- 공동세원 프로그램(Tax-base sharing)은 6가지 주요 목표를 가짐
 - ① 대도시 권역의 성장으로부터 발생한 자원의 공유
 - ② 질서 있는 개발의 실현
 - ③ 현행 지방정부 시스템과 지역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것
 - ④ 모든 지자체에게 권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
 - ⑤ 상이한 개발 혹은 재개발 단계에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
 - ⑥ 환경보호를 장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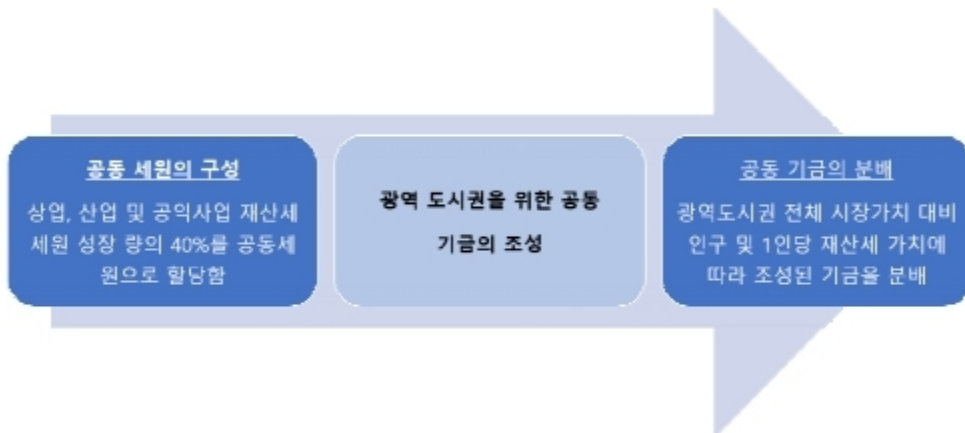


| 그림 1 | 트윈시티 대도시권 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 대상지역

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

- 공동세원 프로그램은의 기본 프로세스는 그림2와 같음
- 지방세 과세 권한을 가진 각 지역은 1971년 이후 해당 지역 내의 상업, 산업, 그리고 공익사업(수도, 전기 등) 영역의 재산세 세원 성장분의 40%를 지역 공동기금에 기여함
- 공동세원 출자 대상은 사업체, 사무실, 점포, 창고,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한 과세분을 포함하며, 개인 자산은 프로그램의 세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지방세 관리관(Local property tax administrator)는 조성된 공동기금을 분배함
- 1인당 재산세 가치가 평균 이하인 지역은 공동 세원의 더 많은 비율을 배분받으며, 평균 이상인 지역은 더 적은 비율을 배분받음
- 구체적인 분배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분배지표(distribution index)를 기반으로 함

$$\text{분배지표} = \frac{\text{평균 재정 능력}}{\text{해당 시/군의 재정능력}} * \text{시/군의 인구}$$



| 그림 2 | 공동세원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세스

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의 효과

- 공동세원 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약 447만 달러의 세원을 확보하고 있음
- 공동세원은 전체 상업, 산업, 공익사업 재산세 세원의 약 33%를 차지하며, 대상지역인 7개 카운티 전체 세원의 약 10%를 차지함
- 공동기금의 분배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확보한 과세 소득은 2019년 기준 약 643만 달러에 이름
-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는 가장 많은 세원을 보유한 지역과 가장 적은 세원을 보유한 지역 간에 1에서 11정도의 격차를 보였으나, 프로그램 도입 이후 1에서 4 범위로 도시들 간의 격차가 줄어들
- 전체 대상 과세지역(taxing jurisdiction) 중 105개 지역이 공동기금에 대한 기여분보다 많은 분배를 할당받으며(net recipients), 74개 지역은 공동기금에 대한 기여분이 분배량보다 적음(net contributor)
- 순 기여자(net contributor)의 상위 20개 지역은 대부분 고속도로나 직업센터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

지방세 공동세원 프로그램의 함의

- 트윈시티의 공동세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및 보유하고 있는 세원을 저해 하지 않는데 그 의의가 있음
-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상 지역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음
- 따라서 특정 권역 내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
- 다만 공동 세원에 포함할 재산 유형의 범위, 분배기준의 설정, 예외지역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

자료 출처

- Hinze, S., & Baker, K. (2000). *Minnesota's Fiscal Disparities Programs: Twin Cities Metropolitan Area and Iron Range*. Research Department, Minnesota House of Representatives.
- Metropolitan Council 홈페이지
(<https://metro council.org/About-Us/The-Council-Who-We-Are.aspx>)
- Wychen (2017) Metro Tax Base Sharing: Net Contributors, Recipients. *North Star Policy Institute*. January 25, 2017
- 2019 Minnesota Statutes, Chapter 473F 'Metropolitan Revenue Distribution'



김진탁 통신원

(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)
kitstar6@gmail.com